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자원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사업소 등에 대한 정기검사와 정밀안전진단의 내용이 유사하므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이 그 고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각각 3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각각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비해 과태료를 높게 부과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고압가스 사업자 등과 동일하게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각각 100만원으로 낮추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031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와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서 최근 2년간 실적이 우수하여 허가관청이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

별표 2의 제7호란 및 제9호란 중 “300만 원”을 각각 “1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의안 소관 부서명〉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본부 에너지안전팀
연락처 (02) 2110 - 544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7조(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와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서 최근 2년간 실적이 우수하여 허가관청이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p>제7조(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와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서 최근 2년간 실적이 우수하여 허가관청이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

